

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61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09. .
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법제처의 ‘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’에 따라 현행 「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중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법체계에 부합하는 용어의 사용(안 제4조, 제12조)
- 나. 수탁자의 의무 중 임면보고 사항, 기부채납 사항 삭제(안 제6조, 제8조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- 가. 입법예고기간 : 2017년 8월 8일 ~ 8월 28일(20일간)
- 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- 가. 규제관련협의 : 의견없음
- 나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

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준용한다” 를 “따른다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에 기부채납 하여야” 를 “받아야” 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준용한다” 를 “적용한다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서명		복지정책과
입 안 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신 영 철
	팀장 직위·성명	복지기획팀장 김 교 성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이 현 섭 (790-563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제21조 및 제21조의2를 <u>준용한다</u>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6조(운영기준) ① (생략)</p> <p>②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사회복지관 중 사자수의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시장에게 임면보고를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·증축·개축 또는 증설을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<u>받아야 하며, 준공과 동시에 하남시에 기부채납 하여야</u>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12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 및 「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<u>준용한다</u>.</p>	<p>제4조(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른다</u>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운영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삭 제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수탁자의 의무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 <u>받아야</u> -----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2조(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적용한다</u>.</p>

[관계법령 발췌서]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7조(기부채납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
2.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, 그 상속인,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